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기본이념과 진리·정의·사랑의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하여 중등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전주대학교
2. 전주비전대학교
3. 전주영생고등학교
4.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에 둔다. <개정 2014.1.1.>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

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전입하여야 하며 이 전입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절 (사 제)

제13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5년
2. 감 사 3년

② 이 법인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 임기는 학교의 장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4.1.>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해임과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의2(개방 이사와 감사의 자격 및 선임 방법)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 및 제25조 제7항에 따른 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는 10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안수집사 이상의 신자로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되는 자로 한다.

② 개방임원은 제24조의3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③ 이사장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 임원은 임기만료 3월 전)이내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임원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감사는 단수 추천)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4조의3(추천위원회 조직과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학평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각 학교의 대학평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야 한다.

- 1. 대학평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6인
-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5인

③ 추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4(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학에는 제24조의6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6.>

【전주대학교】

- 1. 교원 5명 <개정 2016.8.1.>
- 2. 직원 2명 <개정 2016.8.1.>
- 3. 조교 1명 <개정 2021.2.26.>
- 4. 학생 1명 <개정 2016.8.1.>
- 5. 동문 1명
-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전주비전대학교】

- 1. 교원 5명
- 2. 직원 3명
- 3. 학생 1명

4. 동문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③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의5(대학평의원의회의 조직) ① 평의원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의6(대학평의원의회의 기능)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안에 관한 사항
2. 대학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4조의7(대학평의원의회의 운영 등) 평의회 위원 위촉,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1/4(2명)로 한다.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회의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 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1.>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조립사업
5. 농수산물 생산사업
6. 기타 건축 및 토건사업
7. 부동산 임대업
8. (삭제)

9. (삭제)

10. (삭제)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경영한다.

1. 옥리원빌딩 임대사업
2. 풍남빌딩 임대사업
3. 풍남백화점 임대사업
4. 전동빌딩 임대사업
5. 신신빌딩 임대사업
6. 조림사업
7. 주택 임대사업
8. 중앙상가 및 주차장 임대사업
9. 이서사무실 및 창고 임대사업
10. 군산경암빌딩 및 주차장 임대사업
11. 토지 임대사업
12. (삭제)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본 수익사업의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에 둔다. <개정 2014.1.1.>

1. 옥리원빌딩 임대사업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8
2. 풍남빌딩 임대사업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4길 23
3. 풍남백화점 임대사업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5길 17
4. 전동빌딩 임대사업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3길 11
5. 신신빌딩 임대사업
전주시 완산구 태평5길 41-14
6. 조림사업
전북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산64외 3필지 임야
전북 정읍시 입암 신정 195의 1외 3필지 임야
7. 주택 임대사업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5길 53-5
8. 중앙상가 및 주차장 임대사업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7

9. 이서사무실 및 창고 임대사업

전북 완주군 이서면 원은교길 7

10. 군산경암빌딩 및 주차장 임대사업

전북 군산시 서래내길 37-14

11. 토지 임대사업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 5길 29

12. (삭제)

제39조(관리인)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기독교단체에 기부하여 귀속하게 한다.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3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다만, 고등학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 대학교육기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제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정년까지.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정관 제49조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6.1.>

④ 전주대학교의 부총장, 교육혁신본부장, 처(단)장(선교봉사처, 교무처, 학생취업처, 입학처, 기획처, 총무처, 산학협력단), 각 학장, 대학원장과 전주비전대학교의 부총장, 처(단)장(학사지원처, 기획처, 취업지원처, 입학관리처, 총무처, 산학협력단) 및 교목실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5.12.1., 2016.8.1., 2017.9.1., 2018.11.1., 2022.8.1.>

⑤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임용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제43조의2(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43조의3(전형결과 공개) ① 고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11.1.>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민간단체(동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6.11.1.>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신설 2016.11.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②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이 동 법인 산하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교원의 학교의 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입양자녀 1명당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
7.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이 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기본급의 반액(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고등학교 교원은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4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육아 휴직한 교원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7호2,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제48조(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

제4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삭 제 <2016.12.1.>

[본조개정 2016.11.1.]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험 및 책임의 정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1.]

제50조의3(명예퇴직) ① 신동아학원 산하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 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의 명예퇴직에 대한 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며 고등학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관할청의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1.4.30.>

제50조의4(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의5(당연퇴직의 사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1.]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1. 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1.>
2. 제43조 제2항에 규정한 계약제 임용 등에 관한 사항 중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등학교의 경우>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주임급)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총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22.7.1.>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주대학교는 교육부총장, 전주비전대학교는 학사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12.1., 2018.11.1., 2022.7.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 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7.1.>

② (삭제)

제60조 내지 제68조 (삭제)

제3절 (삭 제)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50조의5(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1.>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근속승진, 대우사무직원의 선발, 보직, 전보, 전직,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유지·경영하는 각 학교간의 인사운영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보 임용할 수 있다.

④ 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1.4.30.>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별 또는 직위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며, 고등학교 교직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

다.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 직원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부와 재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각 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8.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총장 등) ① 전주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 2명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2급 직원으로 보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의 순서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

⑤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⑥ 부총장의 보좌업무는 비서실에서 관장한다. 다만, 부총장이 다른 보직을 겸직하였을 경우에는 겸임부서의 선임 행정실에서 보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⑦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둔다.

⑧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을 위하여 창업지원단을 둔다.

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기본계획(교육부 공고 제2022-12호(2022.1.13.))에 의거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을 위하여 LINC3.0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4.2.21., 2017.7.1., 2022.7.1.>

제90조의2(학장, 대학원장) ① 전주대학교에 단과대학,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둔다.

② 각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둔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④ 학장 및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⑤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통합하여 보할 수 있다.

제91조(하부조직) ① 전주대학교에 교육혁신본부와 각 처(선교봉사처, 교무처, 학생취업처, 입학처, 기획처, 총무처)를 둔다. <개정 2017.9.1.>

② 교육혁신본부장과 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다만, 기획처장과 총무처장은 2급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9.1.>

③ 교육혁신본부에 부분부장을,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4.1.1.> <개정 2017.9.1.>

④ 교육혁신본부와 각 처에 실 또는 팀을 둔다. 다만, 실(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1.>

⑤ 교육혁신본부에 교육혁신지원실을 둔다. <신설 2017.9.1., 개정 2019.10.1.>

⑥ 선교봉사처에 선교지원실을 둔다. <개정 2014.1.1., 2017.9.1.>

⑦ 교무처에 교무지원실, 학사지원실을 둔다. <개정 2017.9.1.>

⑧ 학생취업처에 학생지원실, 진로취업지원실을 둔다. <개정 2017.9.1., 개정 2019.10.1.>

⑨ 입학처에 입학지원실을 둔다. <개정 2014.1.1., 2017.9.1.>

⑩ 기획처에 기획예산실, 대외협력홍보실을 둔다. <개정 2017.9.1.>

⑪ 총무처에 총무지원실, 재무지원실, 시설지원실을 둔다. <개정 2014.1.1., 2017.9.1.>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7.9.1.>

제91조의2(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각 단과대학, 학부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 행정지원실을 두며, 행정지원실에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원 행정지원실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교학부장을 둘 수 있으며, 교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2조(부속기관) ① 전주대학교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둔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② 부속기관에 부속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와 내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3조(학보사) (삭제)

제94조(학군단) (삭제)

제95조(예비군대대) (삭제)

제96조(도서관) (삭제)

제96조의2(전자계산소) (삭제)

제3절 전문대학

제97조(총장 등) ① 전주비전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16.8.1.>

③ 전주비전대학교에 부총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교수·부교수 또는 2급 직원으로 보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8.1.>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처장이 부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1., 2016.8.1., 2018.11.1., 2020.1.1., 2022.8.1.>

⑤ 삭제 <2014.8.8.>

제98조(하부조직) ① 대학본부에 각 처(학사지원처, 취창업지원처, 입학관리처, 총무처)를 둔다. <개정 2014.8.8., 2015.12.1., 2017.7.1., 2020.1.1., 2022.8.1.>

② 각 처장(학사지원처, 취창업지원처, 입학관리처)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총무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8., 2015.12.1., 2017.7.1., 2018.11.1., 2020.1.1., 2022.8.1.>

③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 2020.1.1., 2022.8.1.>

④ 각 처에 행정팀을 두며, 필요시 연구팀을 둘 수 있고, 행정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연구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5.12.1., 2018.11.1., 2022.8.1.>

⑤ 삭제 <2022.8.1.>

⑥ 학사지원처에 학생지원팀, 교육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5.12.1., 2016.8.1., 2018.11.1., 2020.1.1.,

2021.4.30., 2022.8.1.>

⑦ 취창업지원처에는 취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4.8.8., 2015.12.1., 2017.7.1., 2022.8.1.>

⑧ 입학관리처에는 입학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4.8.8., 2015.12.1.>

⑨ 삭 제 <2020.1.1.>

⑩ 총무처에는 총무팀, 비서팀을 둔다. <개정 2014.8.8., 2015.12.1., 2020.1.1., 2022.8.1.>

⑪ 삭 제 <2022.8.1.>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8., 2018.11.1.>

제99조(부속기관) ① 전주비전대학교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둔다.

② 부속기관에 부속기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8., 2016.8.1.>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팀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제98조의2(총장직속기구) ① 직속기구로 기획처와 교목실을 두고 기획처에는 기획예산팀, 감사팀을 둔다.

② 기획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기획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행정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교목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교목실에는 목사 자격을 소지한자를 교목으로 둔다.

④ 본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직속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1.]

제100조(학군단) (삭제)

제101조(예비군중대) (삭제)

제102조(문헌정보관) (삭제)

제102조의2(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단장을 두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②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관장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팀을 두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1.>

④ 산학협력단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2조의3(창업지원단) (삭제) <2022.8.1.>

제4절 고등학교

제103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4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

제104조의 2(행동강령) 신동아학원 산하 고등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5절 정원

제105조(정원) 법인 및 각급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와 같으며 고등학교 사무직원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1., 2016.12.1., 2021.4.30.>

제8장 기타 고등학교 관련 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06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주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 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를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한 범위(2배수)내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09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후 1기(2년)은 쉬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1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1조(위원의 당연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당연 퇴직 한다.

1. 위원이 학생의 졸업·전학·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2.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3. 위원이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행위를 할 때

② (삭제)

제1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3조(회의 및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4조(이사장의 감독 등) 학교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6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7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18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19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교육 분쟁 조정위원회

제120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에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1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에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 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23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과 같다.

제125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3. 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6조(위원의 겸직허가) 위원 중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8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9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0조(의사 등의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1조(교감의 출석발언) 위원이 아닌 교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2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분쟁관련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3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34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5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36조(운영경비) ①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제13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138조(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주시 일원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40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명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강홍모	1922. 2. 15	4년	전주시 남노송동 97-1번지
이사	어택용		“	“ “ 91-16번지
“	이영환		“	“ 풍남동 2가 51-1번지
“	김삼순	1919. 1. 4	2년	“ 남노송동 97-1번지
“	이철상		“	“ “ 97-2번지
“	김경덕		“	“ “
“	이상열		“	“ 서서학동 27번지
“	이원팽		“	경북 경주군 경주읍 향오리 372번지
감사	이용진	1918. 8. 23	“	전주시 노송동 97-2번지
“	문덕준		1년	“ 교동 128번지

제141조(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7.1.]

제142조 (행동강령) ① 제141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교의 「교직원 행동강령」으로 정하며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62. 5. 9)

이 정관은 196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63. 1. 22)

이 정관은 196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64. 1. 25)

이 정관은 196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65. 1. 13)

이 정관은 196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70. 2. 19)

이 정관은 197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71. 12. 31)

이 정관은 197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74. 11. 8)

이 정관은 197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76. 2. 5)

이 정관은 197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76. 8. 20)

이 정관은 197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77. 10. 25)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78. 11. 6)

이 정관은 1978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81. 10. 12)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가산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82. 3. 5)

이 정관은 198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82. 6. 17)

이 정관은 198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84. 3.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주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기산한다.

③(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하고,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기있는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기산한다.

④(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주대학교의 인사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인가 1985. 6. 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법인 영생학원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임원으로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③(법인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법인 영생학원에 재직 중인 법인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④(학교의 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영생학원 이사장이 임명한 각급 학교의 장과 고등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인가 1986. 5. 31)

이 정관은 198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86. 7. 2)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인가 1986. 11.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88. 9. 22)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90. 11. 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92. 3. 5)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95. 4. 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96. 2. 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97. 1. 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97. 9. 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98. 8. 3)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전주공업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전주공업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인가 1999. 1. 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99. 7. 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99. 10.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1999. 11. 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0. 6. 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0. 6. 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③(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0. 12. 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1. 2.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1. 5. 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1. 9. 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2. 1. 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2. 4. 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2. 7. 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3. 3. 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은 제43조 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을 준용하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4년
4. 전임강사 : 2년

부 칙 (개정인가 2003. 9. 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4. 8. 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4. 12. 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3항, 제90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5. 5. 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6. 3.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전주공업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전주비전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인가 2006. 7. 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6. 10. 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는〔별표 제2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③(감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7. 2. 5)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7. 8. 1)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7. 9. 17)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8. 1. 28)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8. 3. 18)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3항과 제98조 제1항,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8. 6. 16)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9. 1. 16)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09. 7. 15)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10. 5. 18)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10. 9. 28)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인가 2011. 3. 1)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부처장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부처장은 2011년 2월 28일자로 부처장 보직이 면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전주비전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전주비전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교원의 승진소요년수는 4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정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 2항은 본 정관 시행일 이후 임면된 이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

직	급	별	인	원
계			13	
일	반	직 계	11	
2	급	(참 여)	1	
3	급	(부 참 여)	2	
4	급	(참 사)	2	
5	급	(부 참 사)	1	
6	급	(주 사)	1	
7	급	(부 주 사)	2	
8	급	(서 기)	1	
9	급	(부 서 기)	1	
기	능	직 계	2	
9	등	급	1	
10	등	급	1	

[별표 제2호] <개정 2015.8.29., 2015.12.1., 2016.12.1., 2020.1.1.>

학교별 일반직원 현황

직 급 별	정 원	
	전 주 대	전주비전대
계	204	62
일 반 직 계	151	46
2 급	2	1
3 급	4	1
4 급	12	4
5 급	18	5
6 급	115	35
7 급		
8 급		
9 급		
기 능 직 계	43	14
6 급	2	2
7 급	41	12
8 급		
9 급		
10 급		
별 정 직 계	10	2
5 급	2	1
6 급	2	
7 급	6	
8 급		
9 급		1